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520
----------	------

발 의 년 월 일: 2024년 01월 26일

발 의 자: 이종태 의원(1명)

찬 성 자: 고광민, 김지향, 김태수,  
박영한, 서호연, 우형찬,  
이민석, 이병윤, 이상욱,  
이새날, 이승미, 이종배,  
전병주, 최유희, 허·훈  
의원(15명)

## 1. 제안이유

- 해당 조례는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재난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여 투표할 수 있는데 반해 학부모회 조례는 반드시 재난 등의 상황에서만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호 모순되는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시한 전자적 방식의 학부모 교육활동 참여에 익숙해진 학부모와 총회에 직접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의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

또한 최근 소규모학교 증가 추세 및 단위학교 학부모 대표구성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학년별·학급별 학부모 대표를 대의원회 포함하도록 한 강행규정을 개정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의원회 운영의 효과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가. 총회 운영방법의 융통성 부여 및 전체 학부모 참여 보장 (안 제 13조제5항, 제6항)
- 나. 대의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학교자율성 제고 (안 제14조제1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기본법」 제5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항 중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사유로 인하여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제5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 ④ (생략)</p> <p>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신, 우편, 전자투표 등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p> <p><u>&lt;신 설&gt;</u></p>	<p>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사유로 인하여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 -----.</p> <p>⑥ <u>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제5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u></p>
<p>제14조(대의원회) ① <u>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대의원의 수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u></p> <p>② ~ ⑦ (생략)</p>	<p>제14조(대의원회) ① <u>대의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학교 학부모회의 규정에 따라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구성한 경우 그 대표를 포함한다.</u></p> <p>② ~ ⑦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3조(총회 의결사항 등) 제5항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대면회의에 의한 방법으로 총회”로 변경하고 제6항 “총회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제5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를 신설하며, 제14조(대의원회) 제1항 대의원회 구성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서울시 교육청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    희    선

추계세제팀장      이    정    수

추계분석관        이    홍    래

☎ 02-2180-7952

e-mail : hong1004@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